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위의 영업방해 정보 유통 금지 및 처벌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51호)

2021.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허위의 영업방해 정보 유통 금지 및 처벌(안 제44조의7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1. 9. 14.

다. 회 부 일 : 2021.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별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2호의2, 제74조제1항2호의2).

Ⅲ. 검토의견

1. 허위의 영업 방해 정보 유통 및 처벌(안 제44조의7 등)

가. 개정안 요지

-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2호의2, 제74조제1항2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생략)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u>건전한</u>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u>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현행	개정안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u><신설></u> 3.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생략)	등)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u>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4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다만,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고의적으로 허위·악성 리뷰를 남기거나 별점 테러를 하는 이른바 ‘블랙컨슈머’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점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이용자²⁾의 책무 내용에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추가하고, ② 법 제44조의7제1항³⁾ 불법정보의 유형에 ‘타

1) 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

2)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면서, ③ 이를 위반하여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첫째,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1조4)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는 이 법을 통해 이용자의 책무로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여 ‘타인이 판

-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이 법 또는 다른 법과의 중복규제가 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서는 '명예훼손 정보(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및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2항5)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⁶⁾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

5)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6)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7조(명예훼손)⁷⁾ 및 제311조(모욕)⁸⁾에서는 각각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법 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나,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형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규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

7)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8)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